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017. 3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017. 3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017. 3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부금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준봉 교수(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자: 정복석 회계사(삼일회계법인)

변영선 회계사(삼일회계법인)

2017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4. 사후관리	40
문제점 1)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 통합	41
문제점 2) 사후관리 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내용 보완	56
문제점 3)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	57
문제점 4) 사후관리 규정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항의 실효성 제고	57
5. 기부금단체 관련 규정에 대한 기타 개선사항	58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58
나.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 등에 대해 위임규정 마련	59
다.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단체를 통합하는 방안	60
III. 주요국 기부금세제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	63
1. 세계 주요 국가별 기부금세제 정책 현황	65
2. 기부금세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의 시사점	72
IV. 결 론	75
<별 표>	91
(별표 1)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그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93
(별표 2)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	98
(별표 3)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100
(별표 4)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101
(별표 5)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101
(별표 6) 한국학교를 부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법령 마련	103

(별표 7) 현행 기부금단체의 지정추천시기와 지정시기 관련 개정안	104
(별표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조문의 간소화 및 구체화	105
(별표 9)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의 삭제 또는 실효성 제고	106
(별표 10)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다른 기부금단체로의 확대적용	108
(별표 11)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설립목적 규정의 법률로의 승격	112
(별표 12)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제출 서류의 다른 기부금단체로 확대적용	112
(별표 13)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 통합	115
(별표 14) 사후관리 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내용 명확화	117
(별표 15)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	117
(별표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요청	118
(별표 17)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 등에 대해 위임규정 마련	118
(별표 18) 기부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비교	120

I. 서론



I.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부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비영리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가계 등 민간의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주는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소비절벽, 경제성장 둔화,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재전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은 본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 과세소득이나 세액을 감소시키는 지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부금이 미치는 영향과 기부금단체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세제혜택은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 각각의 지정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기부자와 비영리법인 모두 세법 적용상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부금단체관리 측면에서 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 현황, 문제점 및 개정안



Ⅱ.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 현황, 문제점 및 개정안

1.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개요

공익목적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종류를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의 위문금품의 가액 등 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특별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포함)에 대해 높은 한도를 적용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다고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특별세액공제 또는 손금 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

가. 현행 기부금 규정방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 포함) 또는 특별세액공제로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개인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은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으로 보아 이러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에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부한 금액이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목적과 기부금단체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목적 중 대표적인 것은 법에서 규정한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을 위해 기부된 경우이다. 이외에도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기타 건립비 등

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이 있다.

기부목적은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모든 기부금을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으로 지정할 수 없는 바,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 단체 중 공익성이 있는 단체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부목적으로도 공익성이 강하고 기부받는 주체가 개인 등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법인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이다.

■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

- ① 법에 열거된 기부금단체
: 법법 제24조 제2항 각호(제4호 아목, 자목, 제6호, 제7호 제외)에 열거된 기부금
- ② 법 및 법령에서 열거한 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법법 제24 조 제2항 제4호 아목)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등(법령 제36조의2 제2항)
- ③ 법법 제24조 및 법령 제36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서 부령으로 정한 단체
: 한국학교(법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 법령 제36조의2 제3항, 법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6의5), 사회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법령 제36조의2 제4항, 법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6의6 이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법법 제24조 제2항 제7호, 법령 제36조의2 제5항, 법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6의7)

■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

- ① 법령에서 열거된 기부금단체
: 법령 제36조 제1항 각호(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아목, 제2호 다목, 제5호, 제6호를 제외)
- ② 법령 제36조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부금단체
: 법령 제36조에서 단체명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제1호 아목, 법칙 제18조 제1항 별표6의2), 사회복지 등 기부목적 및 기부단체를 부령에서 규정하거나(제2호 다목, 법칙 제18조 제2항 별표6의3),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기구를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제6호, 법칙 제18조 제7항 별표6의4)
- ③ 법령 제36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부금단체
: 법령 제36조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제1호 사목), 해외지정기부금단체(제5호)

법인세법에서는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지정요건),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지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출서류)와 주무관청이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청을 통해 부령 또는 공고로 지정하는 절차(지정절차),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령 또는 공고로 지정해야 하는 기간(지정기간)을 의미한다.

상기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 별로 법인세법에서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정방식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후관리
법정 ①,②	법 법 § 24 ② 에 따른 기부금단체 (아래 제외)	X	X	X	X	X
법정③	한국학교 (제4호 자목)	O	O	O	O	△ (보고의무없음)
	전문모금기관 (2항 제6호)	O	O	O	O	O
	공공기관등 (제7호)	O	O	O	O	O
지정①	법 령 § 36 ① 에 따른 기부금단체 (아래 제외)	X	X	X	X	X
지정②	제1호 아목, 제2호 다목	X	X	X	X	X
	국제기구	X	O	X	X	X
지정③	민법상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O	O	O	O	O
	해외지정기부금 단체	O	O	O	O	△ (보고의무없음)

상기 표에 보면, 법인세법상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 규정은 법정 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에 따른 학교 등과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에 따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되고자하는 기부금단체에 주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법 또는 법령에서 열거된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①, ②와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①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정절차(주무관청의 신청을 통하는 것)를 거치지 않고 법 또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되거나 삭제되므로, 지정절차와 관련이 있는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②와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령으로 기부금단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지정방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으로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만 법인세법상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데, 그 이유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②의 경우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 현행 규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안

문제점 1)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

■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과 관련된 문제점

가)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 및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으로 지정된 기부금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부령 또는 공고로 지정하는 바, 이 경우에는 공익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나, 그 밖의 단체(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①, ②,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①, ②)는 법이나 법령 또는 부령의 개정을 통해서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바,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 및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 수준의 공익성 검증 등에 대한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나) 특히,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과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②로 지정된 단체는 모두 부령(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 별표6의5, 6의6, 6의7, 지정기부금단체③: 별표6의2, 6의3, 6의4)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으로 지정된 기부금단체만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이 맞지 않아 보인다.

다) 법이나 법령 또는 부령에서 열거된 기부금단체는 규정방식의 차이로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사후관리 규정은 모든 기부금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규정은

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 및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③으로 지정된 기부금단체만 적용받는다.

■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최대한 단일화하여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해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단기적으로는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규정은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안)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그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2안)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
(3안) 법정과 지정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1안)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법 또는 법령에서 단체명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일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정주체에 신청하고 지정주체는 일정한 검토를 통해 해당 단체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함이 공익성의 검증차원이나,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다.

다만, 법정기부금단체는 법법 제24조 및 법령 제36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기부금단체를 법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된 일부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지정요건 등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 또는 법령에 열거된 법정기부금단체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규정방식을 통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한편,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법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칙 별표 6의3에서는 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기타 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령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법칙 별표 6의4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목적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하여서는 지정단체에 관한 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국제기구는 국내법상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다른 기부금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정요건 등은 충족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단체는 통합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위와 같이 법정기부금단체와 일부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하고는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정기부금단체 중 통합이 어려운 일부 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후관리는 통합되지 않는 기부금단체(특히, 법정기부금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단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사후관리는 적용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에서 공익성 등이 높다고 보아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만큼 실제 공익성 등이 높은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안’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1’에 제시된다.

‘1안’의 개정에 대한 실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대부분의 기부금단체는 동일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익성 등이 없는 단체 등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도 모든 기부금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지정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는 기부금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며, 향후 기부금단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지정요건 등의 세법 개정 시 예외를 적용받는 단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 열거되었던 기부금단체(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①)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에서 규정하였던 기부금단체(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②) 중 일부는 지정요

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정규정에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시기를 적절한 시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금단체를 검토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로 통일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많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분은 주무관청에게 지정요건이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안)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관리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설립취지에 이미 공익성이 반영되어 있고 설립허가와 운영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히 통제¹⁾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안’과 같이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통일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을 일원화한다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위한 검토 등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바, 인력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인 ‘2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2안’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2’에 제시된다.

‘2안’의 방식으로 개정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비하여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허가와 관련된 요건이나 설립 이후의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규정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특별법상 설립허가와 관련된 요건 등에 법인세법에서 요구되어야 하는 요건이 누락될 수 있는 점(즉,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라고 하여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별법상 보고의무 등이 법인세법 사후관리 규정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관련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안’의 한계점에 해당한다.

1)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취득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안’에 따른 개정안에 추가로 통합되어야 하는 기부금단체

‘2안’의 개정안에서는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부단체를 통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단체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경우나 기타 통합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하지 않은 단체 중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이에 근거한 부령(법칙 18조; 별표6의3)에서 규정한 단체는 ‘2안’의 통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령(법칙 18조; 별표6의3)에서는 특정 비영리법인이나 기금에 일정한 목적(건립비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 비영리법인 등 중 일부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 경우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이더라도 그 설립취지에 공익성이 없거나 주무관청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안’의 개정안상 통합대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통합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앞서 제시한 개정안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등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한 바,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 기부목적만 규정하고 특정 단체를 규정하지 않은 기부금이나 일정한 기금을 제외한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령(별표6의3)에서 제외하고 상기 ‘2안’(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통합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안) 법정과 지정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법정기부금단체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에서 열거된 단체(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 ①, ②)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령으로 지정한 단체(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 ③)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기부금단체는 법 또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령을 개정하여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바, 법정기부금단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상당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기부금단체를 통합할 이유는 없을 수 있다.

물론 기부금단체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법정기부금단체라 하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상기와 같은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목적이나 지정에 대한 검토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정기부금단체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고 현재까지 법에서 열거된 법정기부금단체(법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 ①, ②)의 경우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3안'은 장기적으로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적용받는 사후관리규정을 법정기부금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 만약, 법정기부금단체가 사후관리를 적용받는다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등이 사후관리 규정에 상당부분 유사하게 규정된 바 지정요건 규정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통합방안(3안) 개정 시 추가 고려사항

(1) 법정 기부금단체와 지정 기부금단체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법인세법상 법정 기부금단체는 아래와 같다(법법 제24조 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 |
|---|

- 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중 제5호2)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부금단체는 2010년12월27일에 조특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이 삭제되면서 동 규정에서 열거된 기부금 단체가 확대되어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조특법 제73조에 열거되었던 기부금단체가 모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과세특례 기부금단체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법인세법으로 이관되면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다.

2) (구)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열거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2010년12월27일 이전 (구)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학교 등이 삭제되면서 이관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특법 제73조 규정은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보다는 높지 않으나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 보다는 높은 수준의 손금한도를 적용받도록 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조특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기부금단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으로 지정되었던 기부금단체는 해당 목적 등을 달성하거나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삭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특법 제73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부금 단체이었다가 2003년에 삭제되었다.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조특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단체가 2010년12월 27일 개정으로 공익성이 높은 수준이거나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인 (2010년12월27일 개정 전)법정기부금단체와 별도의 검토 없이 통합되었다. 또한, 현재 부령(법칙 별표6의5, 별표6의6, 별표6의7)의 개정을 통해 법정기부금단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가 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기부금단체는 공익성이 높은 수준이거나, 국가 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의 단체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몇몇 법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공익성이 현저히 높거나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현재 법정기부금단체 중 단지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거 조특법 제73조에 지정되었던 단체나 추가로 지정된 기부금단체와 유사한 기부금단체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법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미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와 유사한 단체를 거부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법정기부금단체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정되기 보다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높은 기부금단체나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기부금단체 통합 시 이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단체의 요건만을 열거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단체를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단체로 보는 방안에 대한 검토

제3안에 따른 통합방안 중 하나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를 부령 또는 공고 등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법 또는 부령에 기부금 단체가 설립된 근거 법령을 명시

하거나 일정한 지정요건을 열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부금단체를 법령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단체인지 여부를 해당 단체가 직접 판단하므로 기부금단체를 부령 또는 공고로 지정하기 위한 인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부금단체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선의의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등의 불충족으로 세제혜택을 부인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정안은 현행 법조문의 체제의 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본 보고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며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기부금 등을 통합된 기구를 통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기관에 의한 등록 등 절차를 통하여 본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점 2)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 소정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산하에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또는 기관은 독자적으로 이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사회복지법인과 별도의 단체로 인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법령 제36조 제1항 가목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 소정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의는 법인세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실비는 해석하기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으로 볼 때도 있으며, 직접과 간접 비용 전부 포함된 개념으로 볼 때도 있다.

이러한 실비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체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산하의 시설 또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단체를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함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실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한정하도록 개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 1안.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 2안.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 3안.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의할 사항은 앞서 검토된 ‘문제점1)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1안’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도 삭제될 것인 바 상기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

(1안)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산하에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일부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법인단위로 규정(법 제2조)하고 있고, 기업실체의 가정³⁾에 따라 회계의 보고단위도 기업단위로 보고 있는 바, 해당 법인에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손익은 당연히 해당 법인의 회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법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르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기부금

3) 기업은 주주나 가계에서 분리된 경제단위로서 독립된 회계단위로 보아 회계의 기록계산의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회계단위의 공준이라고도 한다.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단체에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그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회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과 보관 등을 관리하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법인이 이러한 시설 또는 단체에 기부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또는 단체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산하에 있는 시설 또는 단체를 적절히 통제·관리하여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이 합당한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여 하는 규정은 당연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3’에 제시된다.

(2안)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산하에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바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 또한, 실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받는 시설 또는 기관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상 회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 일부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모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공익성을 가진 곳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기부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의 보조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와 통제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익성이 낮은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배제하는 ‘2안’도 ‘1안’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2안’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4’에 제시된다.

(3안)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에 통합됨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시설 또는 기관의 운영 관행상 단기적으로는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계속적으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시설 또는 기관 중 실비를 그대로 이용료로 회수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는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실비의 일정수준 이하(개정안에서는 실비의 80%로 함)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실비의 정의가 불분명한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비의 의미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개정안에서는 실비를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해당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의 합계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검증절차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안에서는 수취한 이용료 및 기부금, 지출한 비용 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5’에 제시된다.

문제점 3)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지정방식과 관련된 문제점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한국학교(4호 자목), 전문모금기관(6호), 공공기관등(7호)의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생략)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제36조의 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④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각 호 생략)

법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전문모금기관(6호), 공공기관등(7호)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 뿐만 아니라 한국학교도 부령(법칙 제18조의3 제4항 및 별표6의5)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과 달리 부령으로 지정하도록 한 근거법령은 없다.

따라서, 한국학교도 부령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필요하며, 그 개정안은 ‘별표6’에 제시된다.

3. 세법에 따른 지정시기, 지정절차, 지정요건, 제출서류

법인세법상 대부분의 기부금단체는 법, 대령, 부령에서 직접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정시기,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기부금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에서 지정시기, 지정절차, 지정요건,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 8쪽에 있는 표를 참고할 수 있다.

❖ 지정기부금단체(이하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법정기부금단체(이하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라 한다)

- 한국학교(법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
- 전문모금기관(법법 제24조 제2항 제6호)
- 공공기관 등(법법 제24조 제2항 제7호)

가.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1) 현행 기부금단체의 지정추천시기와 지정시기 관련 문제점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부금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매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법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부금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
<p>법령 제36조의2</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u>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u>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u>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u>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법칙 제18조</p> <p>④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u>매분기별로</u> 한다</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u>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상기 규정에 따르면,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 및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그 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지정되는 바(법령 제36조의2⑦, 법칙 제18조⑥), 연중에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가 된다.

따라서 기부금단체가 연중에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단체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보는 시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이므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가 다르더라도 효력의 발생시점은 동일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시기를 달리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는 분기에 한 번씩 지정되나,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는 반기에 한 번씩 지정된다. 즉,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기부금단체의 경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3월말 또는 9월말)에는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바, 기부금단체가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기부금을 결정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기부규모가 결정될 수 있고 통상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임을 고려하여 볼 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월말에 한번 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개선방안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 및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횟수와 지정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된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됨이 타당하다.

통합하는 시기는 기부금단체가 적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인 분기별로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법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부금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천 후 지정하기까지의 검토기간이 3개월인 점과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에 비하여 추가적인 검토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점,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범법 제24조 제2

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단체의 지정에 대한 검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정시기를 통합할 때에는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기한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하여 현행 규정상 검토기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별표7’에 제시된다. 참고로, 본 지정시기에 대한 개정안은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에서 ‘나. 현행 기부금 규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서 ‘문제점 1)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어느 방안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정시기의 통합으로 인한 실익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상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매 반기 종료일(6월말 또는 12월말)부터 1개월이 되는 날(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10월말 또는 익년 4월말)까지 지정되었으나, 지정시기 통합을 함으로써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매 분기(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마다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출서류는 지정을 원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12월말에 지정받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는 9월말까지)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7월말까지 주무관청이 추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9월말까지만 주무관청이 추천을 하면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본 개정안은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분기마다 행정상 지정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검토된 것이다.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는 새로운 기부금단체를 추가하여도 공고로 변경이 가능하나,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새로운 기부금단체가 추가될 때에는 법법 제24조 제3항(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법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해 부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은 없다)에 따라 부령⁴⁾을 개정해야 한다. 즉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에 새로운 단체를 추가할 때에는 부령 개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를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개정할 경우 빈번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지정시기의 개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령 또는 공고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 역시 한 방법일 수 있다.

4) 한국학교: 법칙 별표6의5, 전문모금기관: 별표6의6, 공공기관 등: 별표6의7

나.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현행 법인세법상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는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는 지정요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단체별로 각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문제점 1), 현실성이 없는 지정요건이 있으며(문제점 2), 같은 법정기부금 단체임에도 다른 형식으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문제점 3)가 있다.

이하에서는 지정요건의 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로, 지정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은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에서 ‘나. 현행 기부금 규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서 ‘문제점 1)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어떤 방안으로 통합되더라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점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조문의 간소화 및 구체화

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은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1)부터5)까지의 요건 이외의 한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나.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을 각각 다른 조항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제5호 규정을 제1호 사목 규정에 합쳐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8’에 제시된다.

문제점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의 삭제 또는 실효성 제고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한 1)~5)의 일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지정요건 중에는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4) 지정요건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2월22일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2012년2월2일 개정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2014년2월21일 개정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정된 이유는 2008년 신설 이후 기부금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부금단체의 활동이 그 활동특성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법인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2008년에 지정기부금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9’에 제시된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법상 혜택이 있는 기부금단체는 원칙적으로 공익성을 가져야 하며, 기부금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공익성이 저해되어선 안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로 201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상기 개정연혁 중 2012.2.2.일 개정이유).

세 차례의 개정으로 기부금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지정요건 규정은 상당 부분 구체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행 규정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만 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체가 없어, 본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기부금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지정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아래 법칙 제18조 제5항)에 ‘해당 기부금단체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주무관청을 동 지정요건의 확인·관리·감독하는 주체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9’에 제시된다.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p>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p>

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참고로 이러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부금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지정요건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관에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넣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선거운동이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점 3)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다른 기부금 단체로의 확대적용

지정요건이 있는 기부금단체 중 법령 제36조의2 제4항의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이 가장 많은데, 이 중 일부 요건은 다른 지정기부금단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이다.

법령 제36조의2 제4항

④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2012. 2. 2. 항변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010. 12. 30.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2010. 12. 30. 신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2010. 12. 30. 신설)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 2. 2. 개정).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2016. 2. 12. 개정)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2014. 2. 21. 개정)

상기 규정(법령 제36조의2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제4호의 지정요건은 다른 지정 기부금단체로 확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요건이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이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요건의 표현을 수정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확대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기부금단체도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요건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받을 예정일 것’,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부터 공시할 예정일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부금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선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규정인 법칙 제18조 제5항에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또는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대표자의 확인서 등)’를 추가시켜야 한다.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지정기부금단체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개정안은 ‘별표 10’에 제시된다.

아래는 전문모금기간의 지정요건인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을 다른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2호 전용계좌의 사용” 과 “제3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확대 적용의 당위성>

상증세법 제50조의 2에 제1항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 50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대부분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현행 규정에 의해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일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용계좌의 사용”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하는 지정요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형평성 등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바,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에 동 지정요건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규정상 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가 이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정요건은 확대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호 회계감사의 의무화 확대 적용의 당위성>

정부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기부금 세제혜택은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규모단체일수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기부금단체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전문모금기관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에도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관리상 특혜로 볼 수 있어 상증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모집기관의 아래 지정요건은 다른 기부금단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공공기관 등에도 이러한 지정요건이 없는 바, **법정 기부금 단체 간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정요건에 위 전문모집기관과 관련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0’에 제시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2010. 12. 30.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2010. 12. 30. 신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2010. 12. 30. 신설)

참고로 위의 전문모금기관 지정요건은 법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의 한국학교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 요건은 국내 소재한 법인만 주로 적

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마찬가지로 외국에 소재한 단체에 한국 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위와 같은 요건을 이행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점 4)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설립목적 규정의 법률로의 승격

법법 제24조 제2항 제6호의 전문모금기관은 설립목적이 법률단계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법법 제24조 제2항 제7호의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이 법령 제36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아래는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언급된 조항을 비교표시한 것이다.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p>법법 제24조 제2항 6. <u>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u>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2010. 12. 30. 개정)</p>	<p>법법 제24조 제2항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법령 제36조의2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2012. 2. 2. 항변개정).</p> <p>2. <u>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u>(2011. 3. 31. 호변개정)</p>

전문모금기관과 달리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통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법 내용만으로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바 설립 목적 규정을 법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정안은 ‘별표11’에 제시된다.

다. 제출서류

1) 현행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의 문제점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과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이 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법 소정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그 제출서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과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관련 규정에서 각각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출서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 제출서류 중 동일한 항목(법칙 제18조 제5항 및 법칙 제18조의3 제3항)

1.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 가.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공공기관 중 법 제24조 제2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 정관(한국학교 제외)
4. 최근 2년간(지정기부금단체) 또는 5년간(법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각 기부금단체 별로 추가적인 제출서류

1.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가.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
2. 한국학교(법칙 제18조의3 제3항 제1호)
 - 가.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3. 전문모금기관(법칙 제18조의3 제3항 제2호)
 - 가.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 나. 최근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4. 공공기관등(법칙 제18조의3 제3항 제3호)
가.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제출서류 중 최근 2년간 또는 5년간 결산서류가 없는 경우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해당 단체는 공통적으로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문언에 충실히 따르자면, 기부금단체의 설립일로부터 서류제출 시점까지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예외규정이 있다.

따라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도 설립시점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실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와 마찬가지로 2년 미만인 경우에 예외규정을 둬야 타당하다.

■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의 제출서류 중 결산서의 제출기간 차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는 최근 2년간의,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산서의 범위에 있어 차등을 두는 근거가 없으며, 기부금단체 간 서류제출 범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이라는 공통된 지정요건이 존재한다. 즉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부금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간은 3년이다.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년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데, 재지정을 위한 시점에 최근 5년간의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기간까지 요구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부금단체는 3년간의 결산서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제출서류의 다른 기부금단체로 확대적용

앞서 지정요건의 문제점 검토 시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 중 “전용계좌의 사용”과 “회계감사 의무화”는 일부 기부금 단체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로 위 표에 열거된 ‘3. 전문모금기관’의 “나.”와 “다.”의 제출서류는 전문모금기관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학교는 현실적으로 해외 소재한 학교로서 외부회계감사를 받거나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

상기 문제점 3가지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2’에 제시된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하여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문이 간소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제출서류에 대한 개선방안은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에서 ‘나. 현행 기부금 규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서 ‘문제점 1)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1안’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4.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기부금단체의 지정 이후에 기부금단체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부여한 이행의무의 보고, 미보고시 조치, 의무위반시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다. 기부금 단체별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 문화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므로 기부금에 대한 허위, 부당공제를 방지하

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한 사후관리 제도를 두어야 한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 중 법인세법에서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3. 세법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요건, 제출서류’에서 검토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이다.

참고로,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은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에서 ‘나. 현행 기부금 규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서 ‘문제점 1)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어느 방안으로 1안 통합되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다만, ‘문제점 3)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는 ‘1안’에 따라 통합될 경우 개정이 불필요하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규정은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규정이 유사하여 이에 대한 통합방안에 대해 검토한 이후 다른 기부금단체에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서도 검토한다.

문제점 1)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 통합

아래와 같이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와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규정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조문의 간소화를 위해 두 조문은 통합하는게 필요하다.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
<p>법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p> <p>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p>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p> <p>⑨ 제4항에 따른 법인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p>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p>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p> <p>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p> <p>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p> <p>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p> <p>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p>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6</p>
--	--

<p>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p>⑫ 주무관청은 제1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p> <p>⑬ 국세청장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p>	<p>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p>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	--

<p>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학교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p> <p>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 배제기간(제3항 제2호, 제4항 제7호 및 제5항 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편, 통합하는 방안에서 참고할 사항으로는 앞서 검토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하기로 한 아래의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도 사후관리 항목에도 넣어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단,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규정에만 존재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아래 규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면 통합된 사후관리에 포함시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가 모두 적용받도록 규정함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삭제 또는 유지하는 방안과 그와 관련된 개정안은 ‘3. 세법에 따른 지정시기,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출서류’의 ‘나.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문제점 2)’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상기 사항 외에도 몇 가지 추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법령 제36조 제8항 및 제36조의2 제1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해외에 소재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는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를 국세청장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규정과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비교해보면, 상증세법에는 법인세법상 규정하지 않은 몇 가지 사후관리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그 내용상 법인세법에도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후관리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동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검토하였다.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법령 제36조 제5항부터 제8항 및 제36조의2 제8항부터 제11항을 통합한 개정안은 ‘별표 13’에 제시된다.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와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 간의 사후관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사후관리 규정이 계속하여 개정되더라도 학교등 기부금단체 및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통합된 사후관리와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규정 비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된 증여세가 일정 금액(현행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인 법령 제36조의3 제4항 제4호(또는 현행 법령 제36조 제8항 제1호 및 제36조의2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이를 위배 시 법인세법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므로, 법인세법 사후관리항목에 사실상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사후관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현행 법인세법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러한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을 요약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익법인등의 이사 수에 대한 제한(제8항), 공익법인등의 재산 중 그 공익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대한 제한(제9항),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적정대가 없이 이뤄진 광고·홍보 제한(제10항), 성실공익법인등이나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제11항)이다. 특히 제11항 규정 위반 시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가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인 법령 제36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은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등을 공익목적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규정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식 보유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과 관련성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규정 중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으로 둘 이유는 없는 점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11항과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에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규정과 법인세법상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을 비교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기준)
<p>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p> <p>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p>	<p>제36조의3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p> <p>④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4. 기부금단체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p> <p>(제4호 이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중복되지 않아 생략)</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 된 규정. 단, 제6호는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를 추정사유로 규정)</p> <p>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각 호 생략)</p> <p>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p>	
--	--

<p>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 호생략)</p>	
---	--

상기 개정되는 내용 이외에 상속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규정은 모두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고려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기준)
<p>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p> <p>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p>	<p>제36조의3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p> <p>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p>

<p>“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제50조의 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이하 생략)</p>	<p>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단,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p> <p>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p>
---	--

■ 사후관리 통합에 따른 현행 규정의 간소화 효과 검토

아래는 ‘별표 13’에 명시된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에 대응되는 동 규정이 통합되기 전 사후관리 규정이다. 사후관리 규정의 통합으로 중복된 기존 규정을 간소화 시켰다.

<p>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의3【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p> <p>①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학교 등(이하 “기부금단체등”)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제1호의 경우 학교 등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및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무를 면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p>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p> <p>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p>	<p>통합 전 사후관리 규정</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p>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p> <p>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p>
<p>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의3【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①</p> <p>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p> <p>3.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p> <p>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p> <p>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p> <p>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p> <p>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p>	<p>통합 전 사후관리 규정</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p> <p>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p> <p>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p> <p>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p> <p>법령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p> <p>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른 전용계좌 ~
8.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
2.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의3【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② 기부금단체등(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 제외)은 해당 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인 제36조 제1호 사목, 제5호에 따른 요건 및 제36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

통합 전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

법령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⑨ 제4항에 따른 법인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의3【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

통합 전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
법령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의3【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④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인 제36조 제1호 사목, 제5호, 제3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통합 전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1.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p>충족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위반한 사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2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 4. 기부금단체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 7. 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
--

<p>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p>법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p> <p>⑩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 5.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p>통합된 사후관리 규정</p> <p>법령 제36조의3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주무관청은 제4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부금단체등이 있는 경우에는 ~ ⑥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

<p>통합 전 사후관리 규정</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

⑦ 국세청장은 제5항,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부금단체 등은 그 통지 내용에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 따라 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단체등의 명칭과 ~

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⑫ 주무관청은 제1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

⑬ 국세청장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학교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

■ 통합된 사후관리(별표 13)와 확대된 지정요건(별표 10) 간의 정합성 검토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은 지정요건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이 확대된 지정요건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개정된 지정요건 규정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p>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생략)</p> <p>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2014. 2. 21. 개정)</p>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p> <p>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p> <p>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p> <p>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p> <p>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받을 예정일 것</p>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 법령 제36조의3
<p>①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학교등(이하 “기부금단체등”)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제1호의 경우 학교 등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및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무를 면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p>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p> <p>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p> <p>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p> <p>3.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p> <p>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p> <p>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p> <p>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p>

<p>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공시할 예정일 것</p> <p>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단,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p> <p>7)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p> <p>8)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p>
--	---

문제점 2) 사후관리 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내용 보완

상증세법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추정된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앞서 사후관리 규정 제4항 제1호에서는 ‘기부금단체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정당한 경우 기부금단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이행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규정은 해당 기부금단체가 기부받았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의 목적(특정 단체에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한 법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과 차이가 있고, 법인세법상 기부금세제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 단체가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바 그 공익성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사료되어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규정보다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 상증세법 개정규정 및 상증세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의 1% 또는 수익사업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전)의 80% 중 큰 금액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이라는 요건 등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표 14’에 제시된다.

문제점 3)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법칙 제18조 제2항, 별표6의3)에 따라 특정 목적의 건립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특정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에 대해선 특정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이 법인세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5’에 제시된다.

문제점 4) 사후관리 규정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항의 실효성 제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 및 제36조의2 제11항 제4호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

정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법인(또는 학교등)에 대해 기부금단체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당 기부금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동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의 대표자 등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세법 규정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다만, 동 규정은 세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범위를 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별표 16’에 제시된다.

5. 기부금단체 관련 규정에 대한 기타 개선사항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소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기부금 관련 규정은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기부금 관련 규정은 기부를 하는 자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바, **법인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검토를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기부금단체가 현행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 수준의 공익성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야 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구분은 단순히 기부하는 자에 따른 구분에 불구한 바, 원칙적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단체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에서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예를 들면

법인이 기부할 수 없는 정치자금기부금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비 등)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수준과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등은 기부하는 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기 보다는 해당 단체 자체의 공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동일한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 단체라면 동일한 수준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등을 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도 그 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가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단체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 등에 대해 위임규정 마련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에 관한 법단계의 위임규정 없이, 기부금의 가액 등은 법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부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단계에서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7’에 제시된다.

한편, 상기 지출시기를 규정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현행 법령 제 37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실제 지출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조문 간에 모순이 발생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2001. 11. 1. 개정).

따라서, 상기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령 제37조의 기부금 지출시기에 손금으로 보도록 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시행령에서 함께 규정함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7’에 제시된다.

다.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법상 공익단체를 통합하는 방안

법법 제24조에 따르면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지정·법정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법정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기부한 법인 입장에서 기부금의 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상속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 관련 규정(상속세법 제16조) 및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상속세법 제48조). 상속법 제16조는 상속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통합대상이 아니라고 볼 때, 상속세법에서는 기부받은 공익법인등 입장에서 기부받은 재산의 증여세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달리 공익법인등이 되기 위한 지정시기나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익법인등을 상속령 제12조 및 상속칙 제3조에서 직접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등의 입장에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받은 이후에 해당 공익법인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법인세법과 비교하여 볼 때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사후관리 규정(Page 66)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과 상속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은 매우 유사하며, 상속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미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속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법인세법에 이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와 관련된 지정시기 등의 규정을 모두 법인세법에서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여부와 관련된 규정과 기부받는 자에 대한 과세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공익법인등이 기부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 공익법인등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공익법인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행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을 허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기부금단체와 관련된 규정을 법인세법에 통합한다면,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여부와 관련된 규정과 기부받는 자에 대한 과세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통일성 있게 관리될 것이며, 기부금단체를 통합한다면 향후 기부금단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현행 법조문의 체계를 개정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본 보고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며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 지정(법정)기부금과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관계

지정(법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정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대부분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법정)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당부분 일치한다.

둘째, 지정기부금이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물품, 특정목적 기부금을 받는 개인(장학금 등)이 있으며 이는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공익신탁 기부금의 경우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과 노동조합 등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의 지정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무상 또는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며,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 및 국제기구는 국내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법인의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등록된 영업자단체 특별회비와 임의협회의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들이 대부분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등록된 영업자단체등의 일반회비의 경우 주는 입장에서는 세금과공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받는 비영리법인은 통칙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예규에 의하여 증여재산으로도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성격의 비영리법인은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세제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차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를 법체계 내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익법인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것

한국전파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정보공유·분석센터,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험협회(총 10개)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부자(법인)에 대한 손금산입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비교한 내용은 ‘별표 18’에 제시된다.

Ⅲ. 주요국 기부금세제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



Ⅲ. 주요국 기부금세제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

1. 세계 주요 국가별 기부금세제 정책 현황

(1) 미국

가. 비영리법인의 세제

미국 비영리 면세단체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IRS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기부금도 자선기부금으로 인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 공익성 관리제도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테스트(Organizational test)와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면세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조직테스트

- 조직테스트는 해당 단체가 다음의 내용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 a. 세법 501조 (c)(3)에서 서술한 목적과 부합성
- b. 면세목적의 활동여부
- c. 자산 사용내역의 적절한 명시
- d. 기관 해산에 대한 내용 명시

○ 운영테스트

- 운영테스트는 해당 단체의 자원이 세법 501조 (c)(3)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이다.
- 면세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2) 일본

가. NPO법인

NPO법인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라 법인격을 얻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다. NPO법은 NPO법인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가 그 기준을 만족할 때 관할관청은 설립을 인정한다.

나. 인정NPO제도

NPO법인 중에서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검증을 통과한 NPO법인에게 인정NPO법인의 자격이 부여된다. 인정NPO법인의 자격이 부여되면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 신공익법인제도

신공익법인제도는 각 부처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의 제도는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로 재량의 폭이 크고, 법인 설립이 간편하지 않았으며, 주무관청이 상이하여 지도 감독이 복잡하였으며, 정보개시 및 공익성 변별 기준이 불충분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주무관청의 공익성 인증 기준의 불분명 및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보조금이나 세제 우대와 관련하여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의 유착으로 인한 폐해 혹은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재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익법인제도의 근원적 개혁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공익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신공익법인제도를 통하여 일반사단, 재단법인과 공익사단,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사단, 재단법인의 설립은 법무국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며, 새로 설립된 법인의 내각부와 도도부현에 신청을 하고, 기준이 충족되면 공익사단, 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공익법인은 공익사단, 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12월1일부터 2013년11월30일까지 5년간 내각부 또는 도도부현으로 전환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산한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익인정위원회와 도도부현의 합의제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영국

가.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

a. 개요

Charity commission(이하 “공익위원회”)은 영국의 비각료부처(예산등의 설정에 있어 독립된 성격의 부처)로 정부나 자선단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공익위원회는 잉글랜드, 웨일즈의 자선단체를 단속하고 등록하는 기관으로 고등법원과 유사한 권한의 준사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매년 국회에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b. 공익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된 관청으로 특정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을 받는다.

공익위원회는 공익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때의 감독은 오히려 공익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가깝다.

공익위원회는 다음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지닌다.

- 자선단체 등록
-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법률적 동의를 제공
- 자선단체의 부실관리에 대하여 조치

c. 자산단체의 등록부와 공시제도

- 공익위원회는 잉글랜드나 웨일즈에 있는 연소득 5,000파운드 이상의 모든 자선단체의 등록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나. 공익성 인정기준

a. Charity Act 2006

영국의 Charity Act 2006은 공익단체 인정기준에 관한 명시적 개념 혹은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소규모 자선단체가 아닌 한 모든 자선단체는 모두 공익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선목적만 인정되면 당연히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규모나 지배구조 등은 자선단체의 승인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공익위원회는 그 단체가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가진다. 공익성 판단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례나 공익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참조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공익목적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b. Charity Act 2011

CA 2011는 자선단체를 ‘자선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정의하고 ‘자선적 목적’에 대해 정의한다.

CA 2011에서는 ‘자선적 목적’에 대하여 i) CA 2011 section3 (1)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ii)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A 2011 section3(1)은 빈곤의 구제 또는 예방, 교육진흥, 종교 진흥, 생명구호 혹은 보건진흥, 시민권 또는 공동사회 발전의 진흥 등 자선적 목적의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4) 호주

가. 호주의 기부금 단체 개요

호주는 과거 자선단체에 대한 지정된 규제 당국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복잡하고 중복된 시스템, 투명성 부족, 기관들의 합법성 여부 확인이 어렵고, 부문 관련 정보 부족으로 공공 정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자선단체 등록부가 없었고,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중구난방으로 자선단체를 관리함으로써 일부 단체는 규제되지 않는 상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20년간 자선단체 부문이 개혁을 요구하여 2012년 어렵게 법과 예산이 통과되어 호주 자선 및 비영리 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ACNC))가 발족되었다.

나. 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ACNC)

a. ACNC 법적 지위

자선 단체들의 총괄 관리감독 기관으로 2012년 12월 설립되었고 위원장은 법정 정책관으로 ACNC법 및 자선법(Charities Act)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ACNC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주 의회에 보고하며 ACNC의 결정은 재판소 및 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b. ACNC법에 명시된 의무

- NFP(Not-for-prifits)부문에 대중들의 신뢰와 믿음을 유지, 보호, 증진할 것
- 지속가능하고 탄탄하며 혁신적인 NFP부문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형식적인 요식 감소에 기여

c. ACNC의 기능

- 단체들을 자선단체로 등록
- 정보제공, 지도, 자문, 기타 지원을 통해 자선단체가 의무를 이해하고 다할 수 있도록 도움
- ACNC 자선단체 등록부(Charity Register) 관리
- 필요시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조치
- 다양한 관할권에 걸쳐 정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간소화된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

d. ACNC를 통한 자선단체 규제의 이점

- 등록된 단체에 대한 신뢰성 제공
- 영연방 세법과 기타 혜택에 대한 접근성
- 자선단체 등록부에 등록

- 온라인 ACNC Charity Portal 사용 권한
- 시의적절한 조언, 지도, 교육 제공
- 점차 형식주의적 요식 감소
- 규제관리: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단체에 대한 조치, 비영리 부문 및 자선 단체 중 최선을 다하는 단체들의 명예 보호
- ACNC는 정보제공/공유(Charity Passport)
- ACNC 자선단체 등록부는 다음 항목을 증진: 부문의 정책성과 투명성, 신뢰와 믿음
- 양질의 데이터 기반 연구

e. ACNC 자선단체 등록부(Charity Register)

- 연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ACNC 자선단체 등록부에 명시
- 대중들에게 무료로 정보 제공
- 자선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투명하고 책무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
- 등록부 상 기재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자선 부문에 대해 배우고, 지역사회에 자선단체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
- 54,007개 단체 등록: 등록부 150만번 열람

f. 등록부에 등록된 단체들의 의무

- 등록 이후 자격요건 유지
- 변동 사항 생길 시 ACNC에 통보(자선단체들은 ‘기관명칭’, ‘주소’, ‘이사회 임원’, ‘기관 관리 문서’에 변동이 있을 시 통보하여야 한다.)
- 각종 기록 관리
- 매년 보고
- 5가지 거버넌스 기준 준수
 - NFP 기관의 목적 및 특징
 - 회원에 대한 책무성
 - 호주 관할 법 준수
 - 대상기관의 적합성
 - 대상 기관이 의무

g. 연간 정보 보고서

- 기본 비재무적 정보: 단체규모, 자선목적, 활동, 수혜자, 직원 수, 자원봉사자 기여 규모
- 재무적 보고(기관 규모에 따라 상이)
25만 호주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체들은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00만 호주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체의 경우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 ACNC의 접근법 및 규제력

a. 규제적 접근법

- Light-touch, 리스크 기반, 증거 기반 접근법
- 정보, 지도, 교육 제공
- 전직 관료를 사용하여 자체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규제 원칙: 관련성, 비례의 원칙, 일관성, 투명성, 시의적절성

b. 규제력

- 정보 수집의 권한
- 모니터링(관련 규정, 관련 정보)
- 시행: 경고, 지시, 강제집행, 금지명령, 해당 기관의 면허 정지 및 철회

c. 등록-철회

- 특정 상황에서는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위원장(Commissioner)은 다음 상황 시 등록철회를 할 수 있음
 - 등록 자격이 없을 경우
 - 등록 절차에서 허위 정보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 법/규제 불이행 시
 - 파산/청산
 - 철회 요청 시

d. ACNC에 대한 심사와 항소

이의에 따라 심사 가능한 결정 사항

- 등록 거절/철회 관련
- 지시를 내리거나 지시를 바꾸는 경우
- 12개월 뒤에도 철회 또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 대상 기관의 면허정지를 유예하거나 시기 변경 할 경우
- 대상 기관 방출 관련
- 행정처분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고할 경우

2. 기부금세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의 시사점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인가주의는 주무관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법률상 구속을 받으므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르는 ‘허가주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할 경우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기부금공제 단체의 선정 및 기술상 문제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금 단체의 규정방식으로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 비영리업인을 설립한 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추천함에 있어 판단기준인 공익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관련 부처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현행의 열거방식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공제 단체로서 인정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이나 하위법령에서 예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나 국회의 자의적인 개입이나 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3)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인증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의 판단기준인 공익성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관에서 인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익성이 인증된 단체에 한하여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세제상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만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공익성을 검증하고 공익성을 인증(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 분류)하는 업무 전반을 하고 있다.

공익성 인증업무를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담당인력의 확정과 전문성 확보의 효과가 있어 공익성 인증작업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

(4) 비영리법인의 사후관리

비영리법인의 사후관리는 통합관리기관에서 책임지고,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통합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리법인의 사후관리는 현재 각 부처와 국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부처의 경우 담당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국세청의 경우 각 비영리법인이 보고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조사의 인센티브가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5) 새로운 통합관리기관 설립 관련 고려사항

비영리법인 통합관리기관은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비영리법인 통합관리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은 새로운 기관에 등록하여 설립되고, 공익성 검증을 받으며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은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IV. 결 론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에 대한 각각의 지정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기부자와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세법 적용상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를 검토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단체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최대한 통일하여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해 지정기간,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단기적으로는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규정은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따라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그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이 방안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1에 제시된다.

둘째, 지정기부금단체 중 특정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방식을 통합하는 방안. 이 방안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2에 제시된다.

셋째, 법정과 지정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이 방안은 장기적으로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 사후관리규정을 법정기부금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 만약,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서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등과 사후관리 규정에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의 통합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또는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또는 지자체 회계 회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또는 기관은 독자적으로 이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사회복지법인과 별도의 단체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비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무적으로는 법령상 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른 단체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이 방안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3에 제시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4에 제시된다.

셋째,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5에 제시된다.

3. 법정기부금 단체 중 한국학교의 지정방식과 관련하여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학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학교에 대하여서도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6’에 제시된다.

4.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가.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현행 규정상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는 분기에 한 번씩

지정되나,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는 반기에 한 번씩 지정된다. 따라서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기부금단체의 경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3월말 또는 9월말)에는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바, 이는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에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기부금을 결정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기부규모가 결정될 수 있고 통상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임을 고려하여 볼 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월말에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 및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를 각 분기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기한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하여 현행 규정상 검토기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별표 7에 제시된다.

다만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는 새로운 기부금단체를 추가하여도 공고로 변경이 가능하나,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는 새로운 기부금단체가 추가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개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를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개정할 경우 빈번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지정시기의 개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령 또는 공고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 역시 한 방법일 수 있다.

나.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1)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의 간소화 및 구체화

지정기부금 단체 사이의 지정요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 별 지정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각 지정요건들을 통합한 개정안은 별표 8에 제시된다.

(2)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2008년에 지정기부금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9’에 제시된다.

둘째, 기부금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지정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이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 기부금단체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체 대표의 확인서 등)’를 추가하는 방안. 이 경우 해당 확인업무를 주무관청에 위탁하여 그 주무관청을 동 지정요건의 확인·관리·감독하는 주체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9’에 제시된다.

셋째,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지정요건을 유지하되 정관에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넣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은 세법상 목적을 위하여 정관에서 선거운동이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3)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중 일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확대적용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중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및 전용계좌에 관한 요건이 다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각 기부금단체 별로 지정요건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요건들은 다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0에 제시된다.

다만 현행 법문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이미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각 지정요건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받을 예정일 것’,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부터 공시할 예정일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규정인 법칙 제18조 제5항에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또는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대표자의 확인서 등)’를 추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설립목적 규정의 법률로의 승격

전문모금기관(법법 제24조 제2항 제6호)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이 법률단계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법법 제24조 제2항 제7호)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이 시행령(법령 제36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경우를 달리 규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그 설립목적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법 내용만으로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규정을 법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1’에 제시된다.

다. 기부금단체의 제출서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과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이 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법 소정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그 제출서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과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규정에서 각각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출서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모금기관 중 일부요건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다른 기부금단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학교는 현실적으로 해외 소재한 학교로서 외부회계감사를 받거나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부금단체도 설립시점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실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와 마찬가지로 2년 미만인 경우에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년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데, 재지정을 위한 시점에 최근 5년간의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기간까지 요구하는 것이므로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부금단체가 3년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의 필요에 부응한 개정안은 별표 12에 제시된다.

5.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하여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와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규정은 매우 유사하므로, 조문의 간소화를 위해 두 조문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방안으로서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하기로 한 특정요건은 사후관리 항목에도 넣어 관리함이 타당하다. 또한 지정요건과 사후관리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사후관리규정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요건을 통합하는 것을 통하여,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성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사후관리 규정이 계속하여 개정되더라도 그 요건이 학교등 기부금단체 및 공고된 지정기부금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형평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법령 제36조 제5항부터 제8항 및 제36조의2 제8항부터 제11항을 통합한 개정안은 ‘별표 13’에 제시된다.

6.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의 정합성 등과 관련하여

가.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의 정합성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의 정합성에 대한 쟁점은 현행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이 아니라 본 보고서에 제시된 통합된 기부금단체 사이의 사후관리 요

건을 전제로 하여 분석된 것이다.

상증세법상 사후관리요건(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된 증여세가 일정 금액(현행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된 사후관리 규정(법령 제36조의3 제4항 제4호; 또는 현행 법령 제36조 제8항 제1호 및 제36조의2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이를 위배 시 법인세법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므로, 법인세법 사후관리항목에 사실상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사후관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역시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요건 및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각 반영한 개정안은 ‘별표 13’에 제시된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의 부과와 관련된 요건을 법인세법에 규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추징에 관한 요건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 등에 관하여 자산수증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추징에 관한 요건 역시 법인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요건

상증세법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상증세법상 규정은 해당 기부금단체가 기부받았을 때 해당 단체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규정이고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은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과 관련하여서도 통일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7년 상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의 1% 또는 수익사업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전)의 80% 중 큰 금액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이라는 요건 등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별표 14’에 제시된다.

다. 특정 목적에 지출된 기부금에 대한 사후관리

특정 목적의 건립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특정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법칙 제18조 제2항, 별표6 의3)은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 자체의 성격에 의하여 손금산입여부가 결정되나, 특정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이 법인세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별표 15’에 제시된다.

7.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소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소득세법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하고 있다.

현행 기부금 관련 규정은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구분은 단순히 기부하는 자에 따른 구분에 불구한 것이므로, 동일한 단체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소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8.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에 대한 규정의 정비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에 관한 법단계의 위임규정 없이, 기부금의 가액 등은 법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부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단계에서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역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별표 17’에 제시된다.

9.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통합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관계

지정(법정)기부금단체(이하 ‘지정기부금 단체’)과 상증법 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정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증법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대부분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법정)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당부분 일치한다.

둘째, 지정기부금이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상증법 상 공익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공익법인이 아닌 이유가 명확한 경우

지정기부금 중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물품, 특정목적 기부금을 받는 개인(장학금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고, 공익신탁 기부금의 경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과 노동조합 등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의 지정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무상 또는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

며,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 및 국제기구는 국내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법인의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공익법인에 대한 취급이 불명확한 경우

등록된 영업자단체 특별회비와 임의협회의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들이 대부분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등록된 영업자단체등의 일반회비는 통칙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예규에 의하여 증여재산으로도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성격의 비영리법인세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세제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를 법체계 내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익법인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것. 한국전과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정보공유·분석센터,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험협회(총 10개)의 경우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들 단체들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나.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통합방안

법인세법은 기부한 법인 입장에서 기부금의 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관련 규정(상증세법 제16조) 및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규정(상증세법 제48조)을 둔다. 상증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달리 공익법인 등이 되기 위한 지정시기나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익법인 등을 상증령 제12조 및 상증칙 제3조에서 직접 열거한다. 위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합할 수 있다.

첫째, 상증세법은 기부시점에는 공익법인 등의 입장에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주로 규정하고 있고, 기부받은 시점이후에 대하여서는 해당 공

익법인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그러나 앞서 사후관리 규정은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상 규정이 매우 유사하다. 상속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이미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법인세법에 이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와 관련된 지정시기 등의 규정을 모두 법인세법에서 통합할 수 있을 수 있다.

셋째,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공익법인 등에 대해 상속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현행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법법 제 29조에 따른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을 허용하면 된다. 이러한 통합방안을 통하여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여부’와 ‘기부받는 자에 대한 과세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통일성 있게 관리될 수 있으며, 향후 기부금단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현행 법조문의 체제를 개정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보고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0. 주요국 입법례에 대한 시사점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첫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가주의는 주무관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법률상 구속을 받으므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르는 ‘허가주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셋째,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할 경우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나. 기부금단체의 기술상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으로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정부부처에서 기부금단체를 지정함에 있어 공익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관련부처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다.

셋째,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기부금공제 단체로서 인정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법이나 하위법령에서 예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적시할 수 있다.

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인증과 관련하여

첫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관에서 인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공익성을 검증하고 공익성을 인증(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 분류)하고 있으나, 공익성 인증 업무를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담당인력의 확정과 전문성 확보의 효과가 있어 공익성 인증작업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

라. 비영리법인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비영리법인의 사후관리는 통합관리기관에서 책임지고,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통합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사후관리는 현재 각 부처와 국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경우 담당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국세청의 경우 각 비영리법인이 보고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조사의 인센티브가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 새로운 통합관리기관 설립 관련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비영리법인 통합관리기관은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새로운 비영리법인 통합관리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은 새로운 기관에 등록하여 설립되고, 공익성 검증을 받으며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셋째,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은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목 표 >



<별 표>

(별표 1)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그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별로 지정주체와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 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통일시키며, 주무관청의 검토를 통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일괄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함.

1안: 법에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을 통합하는 개정방안

2안: 법령에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을 통합하는 개정방안

■ 1안: 법에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을 통합하는 개정방안

[법인세법]

현행	개정안
<p>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p> <p>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 12. 30. 개정).</p>	<p>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p> <p>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u>지정 기부금</u>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u></p> <p>1. <u>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이 있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u>을 말한다.</p>

	<p>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p> <p>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p> <p>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p> <p>라. 영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p> <p>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p> <p>1)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p> <p>2)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p> <p>바. 기타 기금 등에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p>
--	---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u>”란 제1호의 <u>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u>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p>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p> <p>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p>

	<p><u>다. 상기 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것</u></p> <p>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법률 또는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하 현행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3)~5)에 따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지정요건과 동일)</p> <p><u>②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기타 기금 등에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u></p>
--	---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11. 7. 29. 개정).</p> <p>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 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2011. 7. 29. 개정).</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① <u>영 제36조 제1항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u></p> <p>② <u>삭제</u></p> <p>⑤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u>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영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7일 이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2안: 법령에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방식을 통합하는 개정방안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4. 2. 21. 개정)</p> <p>(이하 “생략”)</p>	<p>법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으로서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한) 법인</p> <p>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p> <p>1)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의국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비영리의국법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p> <p>2)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p> <p>3) 상기 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것</p> <p>나.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법률 또는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p> <p>(이하 현행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3)~5)에 따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지정요건과 동일)</p> <p>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p>

	<p>나. <u>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u></p> <p>다. 「<u>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u>」 제14조 <u>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u></p> <p>라. 영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u>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u></p> <p>마.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u></p> <p>1) <u>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u></p> <p>2) <u>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u></p> <p>바. <u>기타 기금 등에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u></p>
--	---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11. 7. 29. 개정).</p> <p>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 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2011. 7. 29. 개정).</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①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u>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u>”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p> <p>② <u>삭제</u></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u>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영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7일 이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별표 2)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별로 지정주체와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 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통일시킴.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라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나 비영리 외국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외국법</p>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목 삭제

<p>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중략)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의 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 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 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나.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5)까지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p>	<p>5호 삭제</p>
--	---------------------

(별표 3)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 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 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p>	<p>법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p>

(별표 4)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개정이유>
 실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공익성이 낮으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한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u>무료로</u>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p>

(별표 5)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개정이유>
 실비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실비에 대해 정의하고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함.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p>

<p>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p> <p>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p>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생략)</p> <p>⑦ 영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 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2013. 2. 23. 신설)</p> <p>⑧ 영 제36조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2015. 3. 13. 개정)</p>	<p>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비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u>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p> <p>⑥ <u>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수취한 이용료 및 기부금, 지출한 비용 명세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⑦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생략)</p> <p>⑦ 영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비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u>”이란 해당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해당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80 이하로 이용료를 수취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는 접대비와 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관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다.</p> <p>⑧ 영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 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항변 개정)</p>
--	---

<p>법칙 제18조의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2014. 3. 14. 제목개정)</p> <p>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또는 제36조의 2 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 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 2 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 (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4. 3. 14. 개정)</p>	<p>(이하 생략)</p> <p>법칙 제18조의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p> <p>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4호 또는 제36조의 2 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 제7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 2 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 및 영 제36조 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은 제6항에 따른 비용 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영 제36조 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은 아래 ‘지정일’을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로 본다)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	---

(별표 6) 한국학교를 부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법령 마련

■ 법인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p> <p>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p> <p>③ 제2항 제4호 자목·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 만약, 법인세법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의 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p> <p>③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2012. 2. 2. 항변개정).</p>	<p>법령 제36조의 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p> <p>③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로서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교를 말한다.</p>

<p>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p> <p>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2014. 2. 21. 개정)</p> <p>(중략)</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4. 2. 21. 개정)</p>	<p>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p> <p>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p>
--	---

(별표 7) 현행 기부금단체의 지정추천시기와 지정시기 관련 개정안

<개정이유>
 법정 기부금단체와 지정 기부금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정시기를 통일함.

현행	개정 안
<p>법령 제36조의2</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 2. 21. 개정).</p>	<p>법령 제36조의2</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별표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조문의 간소화 및 구체화

<개정이유>
 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
 목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의 지정요건은 유사함. 따라서 유사한 지정요건을 통합함으로써
 법조문을 간소화하고자 하고,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 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 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p> <p>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 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 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 는 것으로 인정될 것</p> <p>2) ~ 5) 생략</p> <p>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p>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 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 합”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의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해외지정기부금단체” 라 한다)으로서 1)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2)부터 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p> <p>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 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좌동</p> <p>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정관의 내용상 수 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인 것이 인정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범 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 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 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p> <p>2) ~ 5) 좌동</p> <p>법령 제36조 제1항 제5호</p>

<p>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p> <p>나.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p>	<p><u>삭제</u></p>
--	------------------

(별표 9)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의 삭제 또는 실효성 제고

■ 삭제하는 방안

<개정이유>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4)의 현실성이 없는 요건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생략) 1) ~ 3), 5)생략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p>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생략) 1) ~ 3), 5)생략 4) <u>삭제</u></p>

■ 선거운동과 관련된 지정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에 추가하는 방안

<개정이유>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보완함으로써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4)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의 실효성 제고.

현행	개정안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해당 기부금단체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표 10)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다른 기부금 단체로의 확대적용

■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지정기부금단체로의 확대적용

<개정이유>
 법령 제36조 제4항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중 일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에 지정요건의 형평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정함.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용계좌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에도 도움이 됨.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생략 5) 생략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받을 예정일 것 5) 「<u>상속세 및 증여세법</u>」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공시할 예정일 것 6) 「<u>상속세 및 증여세법</u>」 제50조의 2에 따른 <u>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단,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u> 7) 좌동 8) 좌동

현행	개정안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 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 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 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 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u>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회계 감사를 받을 예정(또는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대표자의 확인서 등)</u>

■ ‘(별표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조문의 간소화 및 구체화’와 통합한 경우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p> <p>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p> <p>2) 생략 3) 생략</p>	<p>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u>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으로서 1)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2)부터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4)부터 6)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단 으로서</u>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p> <p>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좌동</p> <p>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p> <p>2) 좌동 3) 좌동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받을 예정일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p>

<p>4) 생략 5) 생략</p>	<p><u>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거나 직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공시할 예정일 것</u>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단,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7) 좌동 8) 좌동</p>
------------------------	---

■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등에 확대적용

<개정이유>
법령 제36조 제4항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중 일부를 공공기관등의 법정기부금단체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에 형평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정함.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용계좌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됨.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의2 제5항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p>법령 제36조의2 제5항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p> <p>1.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별표 11) 인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설립목적 규정의 법률로의 승격

<개정이유>
 법령 제36조2 제5항 법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법법 제24조 제2항 제7호로 이동시킨다면,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이 일부 통일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으로 어떤 단체인지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개정함.

현행	개정안
<p>법법 제24조 제2항 제6호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생략 나. 생략</p> <p>법령 제36조의2 제5항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p> <p>1. 생략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생략 4. 생략</p>	<p>법법 제24조 제2항 제6호 7. <u>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좌동 나. 좌동</p> <p>법령 제36조의2 제5항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p> <p>1. 좌동 2. <u>삭제</u> 3. 생략 4. 생략</p>

(별표 12)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제출 서류의 다른 기부금단체로 확대적용

<개정이유>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제출서류 중 유사한 항목은 통일시키고,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제출서류를 다른 기부금단체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즉 제출 서류의 범위에 있어서 기부금단체 간에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법조문이 간소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개정안
<p>법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법칙 제18조의 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p> <p>③ 영 제36조의 2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 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 6 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 	<p>법칙 제18조 【기부금단체 등의 범위】</p> <p>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 <u>영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u>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학교는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에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를 동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법인설립허가서(단, 영 제36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법 제24조 제2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최근 <u>3년간</u>의 결산서, 감사보고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만약 설립된 사업연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서만 제출한다)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 및 조합,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법인,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현행	개정안
<p>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p> <p>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p> <p>2.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p> <p>나. 법인설립허가서</p> <p>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라. 정관</p> <p>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p> <p>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p> <p>사. 별지 제63호의 8 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p> <p>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p> <p>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p> <p>3.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p> <p>나. 법인설립허가서(법 제24조 제2항 제7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라. 정관</p> <p>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p> <p>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p> <p>사. 별지 제63호의 9 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p>	<p><u>나.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u></p> <p><u>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u></p> <p><u>라.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u></p> <p><u>마. 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u></p>

(별표 13)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 통합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간소화시키기 위해 통합하여 간소화하였고, 앞서 검토한 지정요건에서 제외하여 사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과 상기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제36조의3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학교 등(이하 “기부금단체등”)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제1호의 경우 학교 등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및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3.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단,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8.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② 기부금단체등(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에 따른 한국학교 제외)은 해당 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인 제36조 제1호 사목, 제5호에 따른 요건 및 제36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2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인 제36조 제1호 사목, 제5호, 제3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위반한 사실
2. 제2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부금단체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 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

⑤ 주무관청은 제4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부금단체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제5항,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기부금단체등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기부금단체등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부금단체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 따라 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단체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기부금단체등의 적용배제기간(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5), 법령 제36조의2 제3항 제2호, 제4항 제7호 및 제5항 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4) 사후관리 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내용 명확화

현행	개정안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4. 2. 21. 신설)</p> <p>1.~4. 생략</p> <p>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4. 2. 21. 신설)</p>	<p>법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p> <p>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u>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다만,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의 1% 또는 수익사업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전)의 100분의 80 중 큰 금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u></p>

(별표 15)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

<개정이유>
 특정목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해당 목적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p>규정없음</p>	<p>법령 제36조 제15항(신설)</p> <p><u>⑮제1항 제2호 다목의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등은 다음의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u></p> <p><u>1. 기부금 수령 목적용 통장을 해당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할 것</u></p> <p><u>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u></p> <p><u>3. 기부금 모금액 전액을 수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u></p>

(별표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요청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한 바, 관련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규정없음	법령 제36조 제9항 및 제36조의2 제1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 제4호(제36조의2 제12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1항 제4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7)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 등에 대해 위임규정 마련

<개정이유>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에 관해서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정함. 기부금의 지출시기 관련 일반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 및 예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같은 시행령 조문에서 통합함.

현행	개정안
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좌동 <신설> ⑤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기부금의 가액과 지출시기 등에 대해

<p>법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p> <p>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p> <p>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p> <p>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p> <p>법칙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p> <p>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p>	<p><u>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법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및 지출시기】</p> <p>②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중에 있는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이 설립된 날(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p> <p><삭제></p>
--	--

(별표 18) 기부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비교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법법 24조 2항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시행령 12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3조 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시행령 12조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시행령 12조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시행규칙 3조 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시행령 12조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p>
	<p>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p>	<p>시행규칙 3조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p>
	<p>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p>	<p>시행령 12조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p>
	<p>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p>	
5호	<p>「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p>	<p>시행규칙 3조 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p>
<p>「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p>		
<p>「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p>		
<p>「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p>		
<p>「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p>		
<p>「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p>		
<p>「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p>		
<p>「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p>		
<p>「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p>		
<p>「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p>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p>「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p> <p>「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p>	
6호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p>시행규칙 3조</p> <p>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p>
7호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p> <p>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p>	<p>시행규칙 3조</p> <p>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p>
소법 34조 2항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재산 아님
법령 36조 1항	<p>1호 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p> <p>1호 나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p> <p>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p>	<p>시행령 12조</p> <p>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p>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1호 바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호 사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호 아목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호 가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법 17조 및 법 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2호 다목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시행령 12조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시행령 12조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범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 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령 12조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숙련기술장려법」 제 6 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및 제 16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시행령 12조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p>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p> <p>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12. 2. 28. 신설)</p>	
3호	제19조 제11호 규정(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구분	지정(법정) 기부금	상증법 상 공익법인	
	6호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소령 80조 1항	2호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회비	출연재산 아님
	3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법 17조 및 법 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시행령 12조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